

#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425
----------	------

2018년 4월 9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안일 : 2018년 3월 20일
- 다. 회부일 : 2018년 3월 26일
- 라. 상정일 : 제28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
2018년 4월 9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재무과장 변서영)

### 가. 제안이유

- 자동차 취득세 등 사무위탁 규정의 법령상 근거 및 송부기한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 무관할 등록의 통일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이륜자동차 관련 취득세 등 사무위탁 범위를 사용신고 외 변경·폐지 신고까지 확대함(안 제4조제1항).
- 2) 자동차 무관할 등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신고서류 전산 송부 기한을 10일로 일원화 함(안 제4조제2항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세기본법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다. 입법예고(2018. 1. 11 ~ 2018. 1. 31)결과 : 의견 없음.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### 가. 개정의 취지 및 배경

-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등록령<sup>1)</sup>에서 규정한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제도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사용본거지 외 구역의 등록관청에서 처리하는 경우, 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위탁사무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 행정안전부 「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보완사안<sup>2)</sup>」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 위탁 범위를 확대(사용신고 → 변경, 폐지 신고까지) 보완하고 관련 서류 전산 송부기한을 일원화(10일, 14일 등 → 10일로 통일)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범위 등 보완(안 제4조)

- 안 제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 취득세 등 사무위탁 범위 중 이륜자동차에 관련한 근거 법령을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9조제1항<sup>3)</sup>에서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<sup>4)</sup>로 변경함으로써 기존의 이륜 자동차 ‘사용(취득)신고’에 한정된 위탁사무의 범위를 사용신고 이외에 ‘변경·폐지신고’까지 포함하도록 확대·보완하여 이륜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.

※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: 이륜차 사용신고 절차 규정

자동차관리법 제48조 : 이륜자동차 사용·변경·폐지 신고 의무 규정

- 1) 자동차등록령 제5조(등록사무의 관할 등) ① 등록에 관한 사무(이하 "등록사무"라 한다)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(이하 "등록관청"이라 한다)가 관할한다.  
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.
- 2)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보완사안 송부(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-599(2017.4.10.))
- 3)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(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)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(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·면장·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- 4) 자동차관리법 제48조(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)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(이하 "이륜자동차"라 한다)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- 안 제4조제2항은 자동차 취득세 등 신고사무의 위탁 처리 시 지방 자치단체 간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신고서류의 전산 송부기한을 기존 각각 ‘10일, 14일’로 규정하던 것을, ‘10일’로 일원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위탁 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.

<2017년 사무위탁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등 시도간 신고실적 규모>

구 분		취득세	등록면허세(자치구세)	
		취득(사용,이전)	변경	말소(폐지)
타시도 자동차 서울에서 등록	건수	211,360	9,049	33,148
	금액(천원)	382,419,283	136,825	511,672
서울 자동차 타시도에서 등록	건수	169,831	23,986	230,379
	금액(천원)	218,199,211	362,585	3,462,985

-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위탁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정부의 기본안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, 정부의 자치법규 기본안 보완사안 통보(2017. 4. 10)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바, 재무국은 보완사안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위탁사무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법적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5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2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3월 20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자동차 취득세 등 사무위탁 규정의 법령상 근거 및 송부기한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 무관할 등록의 통일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이륜자동차 관련 취득세 등 사무위탁 범위를 사용신고 외 변경·폐지 신고까지 확대함(안 제4조제1항)
- 나. 자동차 무관할 등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신고서류 전산 송부 기한을 10일로 일원화 함(안 제4조제2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세기본법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협의사항
  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: 규제없음
  - 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) : 해당사항 없음
  - 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 : 해당사항 없음(미첨부사유서 별첨)
  - 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평가제외

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 : 원안동의

(6) 갈등조정담당관(갈등진단) : 원안동의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협의  
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(2018. 1. 11 ~ 2018. 1. 31)결과 :  
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도 붙임

(3) 비용추계 등 자료: 별도 붙임

##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(제3조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 및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(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서울특별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이전·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(이하 “자동차세”라 한다)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다른 시·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) ① 시장(제3조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 및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 사무(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서울특별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이전·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(이하 “자동차세”라 한다)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 및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외의 지역에</p>	<p>제4조(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) ① 시장(제3조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 및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(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서울특별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이전·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(이하 “자동차세”라 한다)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다른 시·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</p>

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 및 이전·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 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.

1. 자동차 취득세 신고 서류: 10일 이내
2. 자동차 이전·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 서류: 14일 이내

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(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## 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#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 3. 미첨부 사유

자동차 취득세 등 사무위탁 관련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

4. 작성자 : 재무국 세제과 정주영(2133-3357)